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1호 2018. 10. 17.(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8-1042호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2

○ 정선군 공고 제2018-1048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1

○ 정선군 공고 제2018-105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1

○ 정선군 공고 제2018-1059호 임계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공고………………………………………………………………………………3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8-1042호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8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18 착수 고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 사업목적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대단위 밭경작지를 대상으로 농로, 배수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수혜면적 및 사업비

지 구 명	위 치	수혜면적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1지구	115	3,320,000	
기곡지구	신동읍 운치리	115	3,320,000	

4. 사업예정기간 : 2018년 10월 ~ 2020년 12월
5. 사업효과 : 영농기반구축으로 영농편의제공 및 농업생산성 향상도모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정선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 (TEL : 033-560-2373, 2444)
9.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8-1048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 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6조)
라. 상권활성화재단의 정관 기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상권활성화재단의 임원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상권활성화재단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상권 활성화 재단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상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자. 상권 활성화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차. 상권 활성화 재단의 공무원 파견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년 10월 10일~10월 30일(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 전 화 : 033-560-2355
  ❍ 이 메 일 : proomi@korea.kr
  ❍ 팩 스 : 033-560-259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환경 조성
4. 지역상권과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군,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정선군 관련 공무원 3명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경영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확인 · 검사)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권관리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선군 공고 제2018-105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명칭 개정과 규제개선 과제정비 및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9조)
-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안 제9조제13호)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등의 정비로 허가기준 명확화(안 제21조, 제28조)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위원회 자문대상 명확 (안 제21조제1항제2호)
- 산지 외 지역에서도 친환경적인 복구계획 수립(안 제21조제4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기준 명확(안 제21조제5항제1호)
-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의 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안 제28조제2항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제한사항으로「건축법」시행령상의 격리병원, 교정 및 군시시설을 각각 포함(안 제34조)
- 통합되는 미관지구의 제한사항을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안 제35조)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개정(안 제38조)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제한사항 삭제(안 제41조~45조)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삭제(안 제47조)
-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의 명칭 변경(안 제48조)
-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동일하게 적용(안 제50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8년 10월 12일 ~ 2018년 11월 1일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다음과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 중 “(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을 “(경사도가 20도 이상인”으로,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을 “토지이용복구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을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을 “제4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정 고시된”을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 제목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5호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영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 한다.

제5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50조제9호(종전의 제3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5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第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12. (생 략) <신 설>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第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第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	2.-------------------------(경사도가 20도 이상인 ------------------------------

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	-------------------------- -------------------------- -------------------------- 토지이용복구계획의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 ---------------------------- ---------------------------- ---------------------------- ------------.
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 ---------------------------- ---------------------------- --------------- 제4항까지를 ---------------------------- --------.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 -------------------------- --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 14. (생 략)	7. ~ 15. (현행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생 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신 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 8. (생 략)	5. ~ 10. (현행 제3호부터제8호까지와 같음)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안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 제>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 제>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 제>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 제>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 건축물의 제한)	<삭 제>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 제>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신 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신 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신 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 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1.ㆍ2. (생 략)	5.ㆍ6.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신 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신 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신 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신 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신 설>	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 설>	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신 설>	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신 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관계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 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 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 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8.4.19.]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2014.11.11., 2015.7.6., 2016.1.22., 2016.5.17., 2016.12.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시행일:2018년 4월 19일부터]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 지구 및 개발 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12.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4.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 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 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 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도시·군 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 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第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第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정선군 공고 제2018-1059호

임계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임계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임계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 일원
○ 시 행 자 : 정선군수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정선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18. 10. 16 ~ 2018. 11. 2(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FAX 033-560-2599)로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033-560-24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

<table>
<tr><td>사업명</td><td colspan="2">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td></tr>
<tr><td>사업장 위치</td><td colspan="2">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3리 일원</td></tr>
<tr><td>사업자</td><td colspan="2">정선군(농업기술센터)</td></tr>
<tr><td rowspan="2">의견제출자</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td><td colspan="2"></td></tr>
</table>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